

음악연습실 운영세칙

제1조 (목적) 이 운영세칙은 「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」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악연습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악연습실(이하 “음악연습실”이라 한다)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「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명칭 및 사용범위)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악연습실의 대외적 명칭은 “음악마루”라 하며, 연습실은 “음악마루 1”, 다목적실은 “음악마루 2”라 한다.

② 음악연습실에서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.

공간명	사용목적	사용적정인원	규모
연습실(음악마루 1)	밴드, 악기 연습 등 가능 공간	2명 이상-6명 이하	43.09㎡
다목적실(음악마루 2)	밴드, 악기 연습 등 가능 공간	4명 이상-15명 이하	62.94㎡

제4조 (운영시간) ① 음악연습실은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을 정기휴무일로 지정하고, 법정공휴일, 대체공휴일, 근로자의 날은 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이외에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할 수 있다.

② 음악연습실은 09:00~18:00까지 운영하며, 야간대관 요청 시 21:00까지 연장 운영이 가능하다.

제5조 (사용신청 및 사용료 납부) ① 시설의 사용신청은 사용하고자 하는 달의 전월 15일부터 가능하며,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로 한다.

② 음악연습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는 지정된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대관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사용자는 대관 승인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④ 시설의 사용료는 조례를 따르며, 시설 관리자(이하 “관리자”)는 사용료의 면제 또는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증빙을 요청할 수 있다.

⑤ 대관 시간은 [별표]에 따라 1일 기준으로 1회 이용(정리 시간 포함 1회 최대 3시간)이 가능하다. 단, 동일인 및 동일팀이 예약 선점으로 특정시간대를 독점할 경우 관리자는 사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6조 (대관 양도 및 전대 금지) ① 사용자는 승인받은 목적으로만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.

②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했을 경우 관리자는 대관 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.

제7조 (사용자의 손해배상) ① 사용자는 시설·장비 사용 중 발생한 시설·장비의 손상, 파손, 분실, 도난 등에 대한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을 지며,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. 이 경우 배상액은 발생 시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.

② 모든 배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, 음악연습실 사용 과정에서 사용자의 모든 권리·책임은 해당 신청을 한 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.

제8조 (시설·장비의 사용) ① 모든 시설·장비는 외부 반출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음악연습실을 사용하려는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 시 제공되는 악기 외에 추가로 개인이 원하는 악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.

③ 장비·악기 등에 대한 모든 조작은 반드시 관리자의 승인 하에 진행하여야 한다.

제9조 (사용자의 의무) ① 사용자는 승인된 사용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 후, 시설 내·외 주변 정리·정돈을 하여야 하며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가 수거·처리하여야 한다.

③ 사용자는 음악연습실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음주, 흡연, 소란 등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
2. 취사 및 취식 행위
3. 폭발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설치·취급하는 행위
4. 석유, 가스를 사용하는 냉·난방기구를 사용하는 행위

제10조 (운영세칙 준수) ① 사용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,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, 경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퇴소 조치를 명할 수 있고, 추후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본 세칙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본 세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. 단, 본 세칙 이전에 시행된 내용과 본 세칙이 상이하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음악연습실 관리주체의 해석과 결정사항을 우선으로 한다.

[별표]

○ 운영시간(제5조제5항 관련)

구 분	시간대	시간
오전 (1부)	09:30 ~ 12:30	1시간~ 최대 3시간
오후 (2부)	14:00 ~ 17:00	1시간~ 최대 3시간
야간 (3부)	18:00 ~ 21:00	1시간~ 최대 3시간